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8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59호, 2023.12.26)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1일  
국토교통부장관

별표 2의 [한방 투약 및 조제료]의 분류번호 버-1의 분류란 주 중 “10일”을 “10일(단,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,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)”로 한다.

별표 2의 [한방 시술 및 처치료]의 분류번호 허-1의 분류란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주: 1.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,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, 2~3주까지는 주3회, 4~10주까지는 주2회,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.
- 2.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,000원으로 산정한다.
- 3. 신체를 두·경부, 흉·복부, 요·배부, 상지부,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%를 가산한다.

별표 3에 연번 28, 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	첩약	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	1.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·조제한 경우에 인정함. 2.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*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, 별표2 분류번호 버-1 한방 첩약 ‘주’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.  * 첩약 처방내용: 첩약 처방사유,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
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			3.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‘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’을 통해 ‘자동차보험 첩약 처방·조제내역서’(별지 제1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
29	약침술	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 방법	<p>1.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·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.</p> <p>2.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, 별표2 분류번호 허-1 약침술 ‘주 1.’의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.</p> <p>3.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 ‘약침관리시스템’을 통해 ‘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’(별지 제14호서식)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</p>

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2 분류번호 허-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한방 첩약·약침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3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연번 28번(첩약)과 29번(약침술) 제1항 및 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##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·조제내역서

① 기관 정보	의료기관기호	의료기관명
② 환자 정보	환자명	생년월일(YYYY-MM-DD)
	사고접수번호	진료일자(YYYY-MM-DD)
③ 진료 정보	총 투여일수	탕전유형 <input type="radio"/> 자체탕전 <input type="radio"/> 공동이용탕전 <input type="radio"/> 그 외(혼합 등)
	상병기호	주·부상병 구분 <input type="radio"/> 주상병 <input type="radio"/> 제1 부상병
④ 처방·조제 정보	변증	
	첩약명_효능분류	
	처방내역(조성)(g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과 동일
	한약재명	용량(g)
⑤ 비고		

- ※  환자 동의 여부
- ※  장기 처방 한의사 소견 (free text 기재내역)
- ※ 비고 (free text 기재내역)

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·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작성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#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①기관정보, ②환자정보, ③진료정보, ④처방·조제정보를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.
- ②환자정보-환자 생년월일, 진료일자는 YYYY-MM-DD 형식에 맞춰 기재합니다.
- ③진료정보-총 투여일수는 해당 진료분의 청약 투여일수를 기재합니다.
- ③진료정보-상병기호는 KCD 코딩지침에 따라 주상병 또는 제1 부상병을 기재합니다.
- ④처방·조제 정보-해당되는 변증을 선택합니다.
- ④처방·조제 정보-첩약명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첩약명을 free text로 작성하며, 해당되는 효능분류를 선택합니다.
- ④처방·조제 정보-처방내역(조성)(g)은 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를 선택하고, 해당 한약재가 없을 경우에는 free text로 작성합니다.
- ④처방·조제 정보-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 단위는 g로 통일합니다.
- ⑤비고-장기처방 사유 등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합니다.
-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(담당 한의사) 서명이 있어야합니다.
- 첩약을 구성하는 조성 변경 시에는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- 첩약 처방·조제내역서는 처방 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

① 기관 정보	의료기관기호	의료기관명	탕전유형
② 조제내역	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(기호)	조제 방법	
	약침액명	효능분류	
	형태/제형/총 용량(ml)	적용일자(YYYY-MM-DD)	
③ 구성 약제			
(한)약재명	함량(g/ml)		

### ④ 비 고

※ 기타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

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작성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###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##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①기관정보, ②조제내역, ③구성약제는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.
- ①기관정보-의료기관기호, 의료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- ①기관정보-탕전유형은 해당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(기호)에는 약침액을 조제하는 탕전실의 의료기관명,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조제방법은 약침액의 조제방법(증류법, 알코올수침법 등)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효능분류는 약침액의 종류(봉약침, 혈기보양약침 등)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형태는 앰플·바이알·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제형은 액제·산제·기타제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②조제내역-총 용량의 경우 약침액의 총 용량을 기재합니다. (산제의 경우, 2g일 시 2를 기재합니다.)
- ②조제내역-적용일자는 약침액의 구입일자를 YYYY-MM-DD 형식에 맞춰 기재하며, 구입일자를 제외한 조제내역이 변경될 경우, 변경일자를 적용일자로 하여 약침 조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구성약제-(한)약재명에는 약침액에 포함된 (한)약재를 모두 기재하고, 함량은 1ml당(산제의 경우 1g당) 함유된 한약재의 함량(g)을 기재합니다.
- ④비고-추가 기재내용이 있을 시 기재합니다.
-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(담당 한의사) 서명이 있어야합니다.
- 약침 조제내역서는 약침술 청구 전 신고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